신촌지역(마포)3-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

2020. 4. 21. 복지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0. 4. 10..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2020. 4. 13.

다. 상정일자 : 제235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(2020. 4. 21.)
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도시계획과장 이정남

가. 제안이유

신촌지역(마포) 3-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이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-343호로 변경된 기본계획에 따라 도심 내 주택공급확대를 위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15조제2항에따라 마포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되었음.

나. 마포로3구역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 현황

1) 정비사업 개요

(1) 위 치 : 마포구 노고산동 31-77번지 일대

(2) 시행면적 : 3,225.4 m²

(3) 용 도 : 공동주택(도시형), 근린생활시설, 업무시설, 교육연구시설

(4) 시 행 자 : 토지등소유자

(5) 추진경위

- 2010.3.18. : 서울특별시 도시·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[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] 수립 고시(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101호)

- 2013.9.26. : 도시관리계획 (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결정(변경) (서울특별시고시 제2013-314호)

- 2014.6.28. : 서울특별시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
[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] 변경(경미한 변경),
신촌지역(마포)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(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-304호)

- 2019.9.5. : 일몰기한 연장 공람·공고 (마포구공고 제2019-857호) (기정 '14.8.28 ~' 19.8.27 → 변경 '14.8.28 ~ ' 21.8.27)

- 2019.10.17. :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[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]변경 고시 (서울특별시고시 제2019-343호)

- 2019.12.26. : 신촌지역(마포) 3-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 계획 변경 입안을 위한 주민제안

- 2020.1.3. ~ 2.7. : 관련기관 및 부서 협의

- 2020.2.6. ~ 3.7. : 주민공람·공고

2) 정비구역 및 면적(변경없음)

구 분	정비사업 명칭	위치	면 적(m²)		비고	
	경비사립 경쟁	Π Λ 	기 정	변 경	변경후	비고
기 정	신촌지역(마포) 3-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	마포구 노고산동 31-77번지 일대	3,225.4	-	3,225.4	

3) 정비계획(변경)

(1) 토지이용계획(변경)

구 분	명 칭		면 적(㎡)	비 율(%)	비고	
7 U	3 3	기 정	변 경	변경후	비 팔(%)	비포
합	계	3,225.4	-	3,225.4	100.0	-
7] 1] -] 1] 1] 1	소 계	342.1	증) 58.8	400.9	11.9	-
정비기반시설	도 로	342.1	증) 58.8	400.9	11.9	-
কী হা	소 계	2,883.3	감) 58.8	2,824.5	88.1	-
획지	획 지	2,883.3	감) 58.8	2,824.5	88.1	-

(2) 건축물 정비・개량 및 건축시설계획(변경)

가) 기존 건축물의 정비·개량계획

구분	구 역 구 분	지구 구분			정비개량계획(동)						
	명칭	면 적 (m²)	명칭	면 적 (m²)	위 치	계	존치	개수	철거후 신 축	철 거 이 주	비고
기정	신촌지역 마포3 도시정비형	8,638.2	3-3	2,883.3	노고산동 31-77 일대	18	_	_	18	_	
변경	- 기 - 기 - 기 - 기 - 기 - 기 - 기 - 기 - 기 - 기	0,030.2	3-3	2,824.5	31-77 일대	10	_	_	10	_	_

☑ 변경사유 : 단순 구적오차 정정에 따른 면적 변경

나) 건축시설 등에 관한 계획

구분	구 역 구	지구 구분		위치	주용도	건폐율	용적률	높이	비고	
	명칭	면적(㎡)	명칭	면적(㎡)		783	(%)	(%)	(m)	#1-1£
기정	신촌지역 마포3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	8,638.2	3-3	2,883.3	노고산동 31-77 일대	업무	60 이하	기준 402 이하 허용 688 이하 상한 900 이하	100 이하	-
변경		0,030.2	J-3	2,824.5	31-77 일대	주거	60 이하	기준 400 이하 허용 687 이하 상한 813.8 이하	100 이하	_

(계속)

	구 역	구 분	지	구 구 구분	A) -)		건폐율		용적률	높	<u>•)</u>	
구분	명칭	면적	(m²) 명칭	면적(m²)	위 치	주용도	(%)		(%)	(r		비고
		- 2 - 2	전용면적 85 전용면적 40 1립 규모 및	m [*] 이하 규. m [*] 이하 규. 비율	공공주택 공급 모의 주택 : 전 모의 공공주택	[체 세다 : 전체	내수의 80 공공주택	% 이성 백 세다	상 건립 수의 6	60% 이상		
주택의 규모 및		구 분	전용면적		대수		미율(%))	刊	고		
규모별	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	ģ	밀반분양	49.77 49.62		L00 L13		34.13			- 	
		Į Į		49.62		30		36.57 24 (37	.5)	주거용적-		 上화에
		(장기	기일반민간]대주택)	36.49		50	17.0	06 (62		따른 공 공	'공주	-택
			<u>합</u> 계	_		293	-	100.00			-	
		% ()	는 공공주택	전체 세대	수에 대한 비원	울에 해도	강함		'			
	ol સ્ટ્રો સ્ રે	①② 구분 의무 계획하다	목 표 친환경개발 도시경제 활성화 생활SOC 문화인프라 주거안정	따른 허용용 인/ 녹색 건축물이 신재생 신성장산압 대학산 창업 생활SOC 미술관,	-적률 완화량 센티브 대상 건축물 인증 비너지소비총량 에너지이용시설 육성을 위한 상업을 위한 지원센터 등 , 공연장, 박물 영화상영관 '	제 설 성 시설 (그 ·관, wo	기준등급 시 허용·용 총량의 부여 정률방 보상계수	기 준 준등급 준수 허용용적률 최대 총량의 1/2 100%		적 된 100% 23.01% 23.01% 13.87% 50%	소계 289.89% 화대 287% 적용	
심의 [:] 	완화 사항		보행가로 활성화 안전, 방재	무정	가로활성화 용 }애도시조성 재관련시설		정량부여(정량부여(30% - 2 1 -11	50% 30%			
		3			는른 상한용적률 기준용적률 +				1			
		* (-시설 = 1.3 = 1.3 ① + ② + ③	x (400.9 m ² x 0.142 x 6 3) = 813.8%	÷ 2,824.5 m²) 2 87% = 126.829	x (400% %						
		공공 확1	구택 보량 ※ 공	·거용 용적률 ·거용 용적률 ·공주택 공급	를 : 687% x 1/ 를 완화시 : 68 급 용적률 : (②	2 = 343 7% x 9/)-(1))x1/2	3.5% /10 = 618 2 = (618	3.3% .3%-34	13.5%)x	11/2 = 137	7.4%	이상
건축]축물의 선에 관한 계획	l]축지정선 :]축한계선 :		m							

○ 기반시설 제공계획 ※ 신촌지역 마포3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외 기재 생략

7.	н		시행면적	획지면적	정비기반시설 제공면적(㎡)					순부담	비고
Т	구 분			복시선석	계	도로	문화시설 1	분담면적	시설 제공	비율	비끄
신촌지역 마포3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		기정	3,225.4	2,883.3	342.1	342.1	-	-	_	10.6	-
	3–3	변경	3,225.4	2,824.5	400.9	400.9	<u>-</u>	<u>-</u>	-	14.2	

- ☑ 변경사유 : 단순 구적오차 정정에 따른 면적 변경
 - (3) 정비사업새행 예정시기 및 시행계획(변경)

시행방법	시행예정시기	사업시행예정자	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	비고
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	정비구역 (변경)지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4년 이내	토지등소유자	현황 : 29세대, 계획 : 293세대 중) 264세대	-

(4)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: 해당 없음.

다. 참고사항

1). 관계법령

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-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」
- 2) 주민공람 : 2020. 2. 6. ~ 2020. 3. 7.(의견 없음)
- 3) 주민설명회 : 2020. 3. 4. 15:00(잠정연기)

3. 검토보고(전문위원 신준호)

가. 입안 배경

 신촌지역(마포) 3-3지구는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-101호(2010.3.18.)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(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) 수립(신촌 지역 정비예정구역)되고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-304호(2014.8.28.)로 정비구역 지정된 지역으로 노후・불량된 건축물이 밀집(총 18개동 중 16개동, 약 89%)되어있는 지역이며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-343호로 변경된 「2025 서울특별시 도시·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(도시정비형 재 개발사업부문)」에 따라 공공주택(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)을 포함한 도심 내 주택공급확대를 위하여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임.

나. 주요 변경 사항 검토

- 신촌 지역중심 주용도를 일반업무・상업 용도에서 주거용도로 허용 변경하는 것은 「2025 서울시 도시・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」 변경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 한양도성 도심부에만 적용하던 '용도용적제⁸) 배제시책'을 한양도성 도심부 이외 지역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사항임.
- 정비기반시설 제공계획의 도로는 순부담비율 10.6%에서 14.2%로 변경된 사항으로 장래 인근 지구 정비사업 시행을 고려하여 도로 확폭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, 이는 3구역내 전체 교통처리계획 측면을 고려하였을 때 타당하게 보임. (도로: 8m→12m, 6m→10m)

다. 종합의견

- 금번 계획 변경은 「2025 서울특별시 도시・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」(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)(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-343호) 의 최근 주택시장의 국지적 과열현상으로 주택공급의 확대의 필요성과 청년, 신혼부부 등 1~2가구에게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의 필요성이 대두되어,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내 주거허용 확대 차원의 계획 변경이 이루어진 사항임.
- 기존 한양도성 도시부에만 적용하던 '용도용적제 배제시책'을 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 적용기준을 준용하여 도심내 주거공급 확대에 대한 한시적 서울시 정책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주

⁸⁾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용도의 혼합률에 따라 용적률을 차등하는 제도

용도 변경을 적극 반영한 사항으로 관계 법령 및 규정 등에 어긋남이 없어 보임.

- 다만, 인근 개발계획에 따른 교통처리계획의 면밀한 검토와 생활SOC시설 도입용도 및 유지·관리방안 설정의 방법은 도심부 주택공급임을 고려하여 생활편의, 지역일자리 창출, 구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시설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 유도해야 하겠음.
- 아울러, 건축시설내 주차장 면수가 금번 변경으로 법정주차면(175대)수
 기준에는 부합하나, 주차면수가 당초보다 다소 줄어듦에 따라 향후 주차
 수요를 면밀히 검토하여 주차면수 확보에 노력해야 하겠음.(235대→224대)
-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- 5. 토론요지 : 없 음
- 6. 심사결과 : 원안채택
- 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- 8. 기 타 : 없 음